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의무 신설〉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6012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의무 신설	3

I. 개요

1.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1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21인
- (2) 제 안 일 : 2024. 11. 28.
- (3) 회 부 일 : 2024. 11.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8월말 기준 약 150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고, 매년 7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및 제1장의2 제목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자격’ 장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미이수시 종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실태 신고를 반려했을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 (안 제1장의2, 제11조의3제5항 및 제13조의2 신설, 제58조제2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제1장의2 사회복지사의 자격</u>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u> <u>제13조의2(사회복지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사회복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u>

법률 제2050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④ (생략)	<u>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단서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했을 수 있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법률 제2050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3항,-----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¹⁾

- 동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011년 법 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4차례 실시되었음.

<사회복지사 고용 현황>

(2023. 12. 말 기준)

총계	사회복지시설·법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기타 사회복지 관련기관
182,340명	117,187명	32,120명	33,033명

※ (기타 관련기관) 법인·시설 제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등록 인원 + 영역 별(의료, 학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취업상황 및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 ② (생략)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를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회복지사의 현황 파악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파악 차원에서 신고 의무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므로, 미이행을 이유로 자격정지를 곧바로 부과하는 것은 신고제도 도입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통보가 이루어지고 일정기간의 이행 준비 시간이 부여된 다음에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자격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보수교육 미이수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불합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육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교육으로 구분²⁾되고, 개정안은 단서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 신고를 반려했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13조제1항³⁾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2)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⁴⁾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고 있던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다소 불합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 현황>

(2023. 12. 말 기준)

의무대상자	이수자	예외 대상자	미이수자
76,261명	66,932명	7,733명	1,596명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4) 「사회복지사업법」 (2025.4.23. 시행예정)

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신고제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면허제도에서 무면허자의 업무 제한, 명의 도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강한 규제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의 신고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또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음을 이유로 자격정지 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외 다른 기관 취업까지 제한하게 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현행과 같이 과태료 처분으로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 필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용) 사회복지사 자격신고제는 국가자격으로서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제도로 필요한 입법사항임.

- 신고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을 현업 종사자와 비종사자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 요건을 달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

문 의 처
02)6788-5497

